

언론조정신청에서 보인 ‘피해’ 주장과 취재 관행의 문제

- 몇 가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김 민 남
(동아대 신방과 명예교수)

I 들어가는 말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구제 방법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한국은 법원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 등의 조정과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을 갖추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에 관한 조정과 중재라는 제도는 사법부에 의한 전통적인 소송절차제도에 비해 상당한 특징과 장점을 지닌 것으로서, 매우 성과 있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석희태, 2006). 중재위원회라는 법정기관을 활용한 언론피해 구제제도는 반론권 제도가 일반화된 서구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한국 법체계상의 독특한 제도로 법원이 아닌 기관에 의해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일종이라 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0년 12월 31일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후 반론보도청구권 등에 대한 중재를 해오면서 초기부터 언론계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김창룡, 2001)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의 핵심 중재대상인 반론보도청구권의 위헌시비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권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1. 9. 16. 선고 89헌마65 결정)이 나오고 중재활동에 대한 오해도 상당히 해소되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중재위원회의 조정제도 실효성 여부에 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중재위원회의 중재가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견해에서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인 언론피해구제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크다(Lee, 1998).

먼저 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활동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언론중재제도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연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보상 효과가 미약해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중재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언론사가 합의를 거부했을 경우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장호순, 2003; 김창룡, 2001)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언론보도를 둘러싼 다툼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 가능성이 적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조정결과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필요적 중재제도는 언론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언론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운용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김중서, 1994).

이에 반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양삼승(2000)은 1981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언론중재 사건 신청 현황을 분석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사건들이 중재 성립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30.4%)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신청취하 항목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 성립을 토대로 한 취하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한다면 중재과정에서의 합의비율은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중재위원회 조정실적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이상 한편으로 중재 대상을 넓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중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언론피해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이 포괄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의 입법배경이 되었는데 종전의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조항이 분리되어 2005년 언론중재법으로 독립입법되었으며 시행된지도 2년이 지나고 있다. 지난 해 이 법의 몇몇 조항에 대한 일부 언론사들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가처분 결정 조항을 제외하고는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약간의 파동은 있었지만 언론중재법은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를 둘러싸고 신청인인 '피해자'와 피신청인인 언론사

사이의 주장을 조정하는 조정심리사건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언론피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의식이 상당 수준 향상되었거나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언론사들이 반론, 정정보도 때로는 손해 배상 등의 결정을 받는 경우 궁극적으로 언론사의 명예나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취재 관행 등 제작 과정상 문제점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일선 기자들이 사실확인, 현장접근, 취재 대상의 의견이나 입장 등을 살피고 그 윗선의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과정 등에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앞서와 같은 분쟁 등을 줄일 수 있으리라는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겠다.

부산 중재부의 경우, 2005년 조정신청건수가 35건 이었던 것이 2006년엔 42건으로 늘었다. 서울은 592건에서 709건, 대구 14건에서 31건, 광주 44건에서 55건, 경기 87건에서 11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체적 사건의 조정심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 당사자 사이의 법익이 상충되는 경우 비교제량하여 적절한 수준의 조화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론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하는 자유'로 일컬어질 만큼 핵심적 기본권이요 민주주의 질서 유지의 기본이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자유도 개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규정이요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 언론중재법의 운용에서 앞서 언급한 '조화'가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오늘날 언론이 사회적 핵심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고 그래서 언론은 어느새 우리 사회에서 '권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조화'를 찾는 일이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2장 언론의 사회세력화와 공적 규제, 제3장 언론에 의한 피해사례와 취재 관행, 제4장 조정심리제도의 활성화와 언론활동의 조화로 글을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제3장에 역점을 둘 것이다.

II 언론의 사회세력화와 공적 규제

1. 언론의 속성과 권력화